

분석팀장 정성호:010-2377-1589

|        |                                     |                                 |   |
|--------|-------------------------------------|---------------------------------|---|
| 회<br>사 | 회 사 명                               | (주)선우비에스                        | 직 인   |
|        | 대 표                                 | 정 상 식                           |  |
|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br>615-3 STX 514-1호 |   |
|        | 사업자번호                               | 113-86-62460                    |   |
|        | 전화:02-6494-0072 , FAX:0505-220-0010 |                                 |   |
|        | 홈페이지 주소 : WWW.bid25.com             |                                 |   |

|             |       |       |     |
|-------------|-------|-------|-----|
| 고<br>객<br>사 | 회 사 명 |       | 직 인 |
|             | 대 표   |       |     |
|             | 주 소   |       |     |
|             | 사업자번호 |       |     |
|             | 전화/팩스 |       |     |
|             | 계약일자  | 2021년 | 월   |

|        |  |        |  |       |  |
|--------|--|--------|--|-------|--|
| 대표자성명  |  | 담당자성명  |  | 아 이 디 |  |
| 대표자휴대폰 |  | 담당자휴대폰 |  | 비밀번호  |  |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사에게 전자입찰의 낙찰예상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사는 낙찰시 이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제공수수료)**

- 1항 고객사는 회사가 제시하는 낙찰예상가를 이용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회사에게 정보제공 수수료를 낙찰가의 2.0 % (VAT 별도)를 지급한다. (단,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총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적용하여 정보제공수수료를 제공한다.)
- 2항 정보제공수수료는 수급공사의 적격심사 통과일로부터 30일내 지급한다. (단, 정보제공 수수료가 1,000만원 이상일 때는 50일내 지급한다.)
- 3항 제2조 1항,2항의 효력은 웹사이트(WWW.bid25.com)전화/팩스/모바일에서도 적용된다.

**제3조 (낙찰인정범위)**

- 1항 회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확정된 경우
- 2항 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10.000원 미만으로 절상/절하하여 낙찰이 확정된 경우
- 3항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1순위는 아니지만 낙찰자로 확정된 경우
- 4항 동가로 2순위가 된 후 추첨을 통해 낙찰자로 확정된 경우
- 5항 회사가 고객사에게 공동도급 제공하여(구성업체와 분담업체) 낙찰된 경우 해당업체가 참여한 지분율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다.

**제4조 (효력상실)**

- 1항 고객사가 제2조1항의 정보제공수수료를 제2조2항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2항 회사가 제공하는 낙찰예상가를 고객사가 투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3항 고객사 스스로 자진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5조 (면책)**

회사는 고객사의 투찰을 대행하지 않으며, 오직 고객사의 낙찰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여부를 포함한 낙찰과 관련한 모든 판단을 고객사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따라서 고객사의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귀속한다.

**제6조 (관할법원)**

- 1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 2항 회사와 고객사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관할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